

교부 또는 재교부수수료(제62조제2항관련)

허 가(면 허)구 분	수 수 료
1. 법 제4조에 따른 제조업허가	
가. 총포(공기총을 제외한다) 제조업 허가	3만원
나. 공기총·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제조업 허가	2만원
다. 총포 수리업허가	1만원
라. 산탄탄알·연지탄 제조업 허가	5천원
마. 화약·폭약·제조업 허가	5만원
바. 화약류 변형 가공업 허가	3만원
사. 화공품 제조업 허가	2만원
아. 꽃불류 제조업 허가	1만원
자.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5천원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임대업 허가	
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판매업·임대업 허가	1만5천원
나. 화약류 판매업 허가	2만원
다. 판매업·임대업 허가사항 변경	5천원
3. 법 제21조에 따른 화약류의 양도·양수허가	
가. 화약·폭약 40톤 이상의 양도·양수허가	1만원
나. 화약·폭약 20톤 이상 40톤 미만의 양도·양수허가	8천원
다. 화약·폭약 10톤 이상 20톤 미만의 양도·양수허가	5천원
라. 화약·폭약 10톤 미만의 양도·양수허가	3천원
4. 법 제12조에 따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소지허가	
가. 업총·소총·권총의 소지허가	5천원
나. 공기총·도검·산업공업용총·그 밖의 총포·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소지허가	3천원
5.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허가	2천원
6. 법 제18조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	
가. 화약·폭약 100톤 이상의 사용허가	1만원
나. 화약·폭약 50톤 이상 100톤 미만의 사용허가	8천원
다. 화약·폭약 10톤 이상 50톤 미만의 사용허가	5천원
라. 화약·폭약 1톤 이상 10톤 미만의 사용허가	3천원
마. 화약·폭약 1톤 미만의 사용허가	2천원
바. 꽃불류 사용허가	1천원
7. 법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가. 1급 저장소 설치허가	1만원
나. 2급 저장소 설치허가	8천원
다. 3급 저장소 설치허가	5천원
라. 수중·실탄·꽃불류·장난감용 꽃불류·도화선 저장소 및 간이저장소 설치허가	3천원
8. 법 제28조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 및 화약류관 리보안책임자 면허	3천원
9.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재교부	1천원
10. 법 제4조의2(법 제6조의2 또는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가. 총포(공기총을 제외한다)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만원
나. 공기총·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6천6백원
다. 총포수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3천3백원
라. 산탄탄알 및 연지탄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천6백원
마. 화약·폭약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만6천6백원
바. 화약류 변형 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만원
사. 화공품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6천6백원
아. 꽃불류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3천3백원
자.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판매업 및 임대 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5천원
차. 화약류 판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6천6백원
카. 1급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3천3백원
타. 2급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2천6백원
파. 3급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1천6백원
하. 수중·실탄·꽃불류·장난감용 꽃불류·도화선 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1천원